

#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세대주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사 유	비 고
서*문	02.08.01	전북 군산시 신촌1길 36, 505호	서*원	2019.09.01. ~2020.08.31	폐문 부재	
오*현	02.08.05	전북 군산시 번영로 188-22, 1315호	김*희	2019.09.01. ~2020.08.31	폐문 부재	
송*정	02.08.13	전북 군산시 백릉안4길 41-4, 4층 402호	송*수	2019.09.01. ~2020.08.31	폐문 부재	
구*정	02.08.29	전북 군산시 양안로 123, 614호	구*희	2019.09.01. ~2020.08.31	폐문 부재	

※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 
(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 )

( 담당자 : 장대통 문의전화 : 063-454-7528 )

2019 년 9 월 4 일

군산시 조촌동장

